#### 표8-4

## 갑상선암 분류표



약관에서 정한 "갑상선암"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 2020-175호, 2021. 1. 1 시행)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.

대 상 질 병 명	분류코드
갑상선의 악성신생물(암)	C73

- 주) 1.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"갑상선암"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.
  - 2.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
  - 3.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지침서의 "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"에 따라 C77~C80[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(암)]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(암)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(최초 발생한 부위)를 기준으로 합니다.

## 표10-1

#### 고액암 분류표



약관에서 정한 "고액암"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 2020-175호, 2021. 1. 1 시행)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.

대 상 질 병 명	분류코드
1.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(암)	C40 ~ C41
2.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(암)	C70 ~ C72
3. 호지킨 림프종	C81
4. 소포성 림프종	C82
5. 비소포성 림프종	C83
6. 성숙 T/NK-세포 림프종	C84
7.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	C85
8. T/NK-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	C86
9.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	C88
10. 다발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	C90
11. 림프성 백혈병	C91
12. 골수성 백혈병	C92
13. 단핵구성 백혈병	C93
14.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	C94
15.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	C95
16. 림프, 조혈 및 관련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(암)	C96
17. 만성 골수증식 질환	D47.1
18.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[과호산구증후군]	D47.5
19. 췌장의 악성신생물(암)	C25

- 주) 1.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"고액암"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.
  - 2.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
  - 3.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지침서의 "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"에 따라 C77 ~C80[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(암)]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(암)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(최초 발생한 부위)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.

### 표10-3 남성12대주요암 분류표



약관에서 정한 "남성12대주요암"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2020-175호, 2021. 1. 1 시행)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.

대 상 질 병 명	분류코드
1 이스이 아저지새무(아)	C00
1. 입술의 악성신생물(암)	C01
2. 혓바닥의 악성신생물(암)	C02
3.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(암)	C02
4. 잇몸의 악성신생물(암)	C03
5. 입바닥의 악성신생물(암)	
6. 구개의 악성신생물(암)	C05
7.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(암)	C06
8. 식도의 악성신생물(암)	C15
9. 위의 악성신생물(암)	C16
10.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(암)	C22
11. 담낭의 악성신생물(암)	C23
12.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(암)	C24
13. 후두의 악성신생물(암)	C32
14. 기관의 악성신생물(암)	C33
15.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(암)	C34
16. 흉선의 악성신생물(암)	C37
17. 심장, 종격 및 흉막의 악성신생물(암)	C38
18.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(암)	C40
19.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(암)	C41
20. 음경의 악성 신생물(암)	C60
21. 고환의 악성신생물(암)	C62

- 주) 1.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"남성12대주요암"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.
  - 2.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
  - 3.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지침서의 "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"에 따라 C77~C80[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(암)]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(암)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(최초 발생한 부위)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.

## 표10-4 여성12대주요암 분류표



약관에서 정한 "여성12대주요암"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2020-175호, 2021. 1. 1 시행)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.

대 상 질 병 명	분류코드
1. 입술의 악성신생물(암)	C00
2. 혓바닥의 악성신생물(암)	C01
3.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(암)	C02
4. 잇몸의 악성신생물(암)	C03
5. 입바닥의 악성신생물(암)	C04
6. 구개의 악성신생물(암)	C05
7.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(암)	C06
8. 식도의 악성신생물(암)	C15
9. 위의 악성신생물(암)	C16
10.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(암)	C22
11. 담낭의 악성신생물(암)	C23
12.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(암)	C24
13. 후두의 악성신생물(암)	C32
14. 기관의 악성신생물(암)	C33
15.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(암)	C34
16. 흉선의 악성신생물(암)	C37
17. 심장, 종격 및 흉막의 악성신생물(암)	C38
18.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(암)	C40
19.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(암)	C41
20.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(암)	C53
21.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(암)	C54
22.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(암)	C55
23. 난소의 악성신생물(암)	C56

- 주) 1.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"여성12대주요암"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.
  - 2.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
  - 3.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지침서의 "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"에 따라 C77~C80[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(암)]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(암)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(최초 발생한 부위)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.

# 표11-1 뇌혈관질환 분류표



약관에서 정한 "뇌혈관질환"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 2020-175호, 2021. 1. 1 시행)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.

대 상 질 병 명	분 류 코 드
거미막하출혈	160
뇌내출혈	161
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	162
뇌경색증	163
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	164
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	165
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	166
기타 뇌혈관질환	167
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	168
뇌혈관질환의 후유증	169

- 주) 1.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"뇌혈관질환"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.
  - 2.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

#### 거미막하출혈

뇌동맥류의 파열이나 뇌동정맥 기형 등의 원인으로 거미막하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하 는 증상

## 표11-2

### 뇌출혈 분류표



약관에서 정한 "뇌출혈"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 2020-175호, 2021. 1. 1 시행)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.

대 상 질 병 명	분 류 코 드
거미막하출혈	160
뇌내출혈	161
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	162

- 주) 1.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"뇌출혈"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.
  - 2.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

#### 거미막하출혈

뇌동맥류의 파열이나 뇌동정맥 기형 등의 원인으로 거미막하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증상

## 표11-4

#### 뇌경색증 분류표



약관에서 정한 "뇌경색증"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 2020-175호, 2021. 1. 1 시행)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.

대 상 질 병 명	분류코드
뇌경색증	163

- 주) 1.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"뇌경색증"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시점 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.
  - 2.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

## 표12-1 | 허혈심장질환 분류표



약관에서 정한 "허혈심장질환"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2020-175호, 2021. 1. 1 시행)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.

대 상 질 병 명	분 류 코 드
협심증	120
급성심근경색증	121
후속심근경색증	122
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	123
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	124
만성 허혈심장병	125

- 주) 1.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"허혈심장질환"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.
  - 2.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

#### 심근경색증

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동맥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심장 부위가 괴사하는 것. 상당히 진행된 동맥경화증에 의해, 또는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전이생길 때 발생함